

2021년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4.(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9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45건(안전번호 제2021-45898호~46642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45898호~45899호 쇼핑몰 게시물에 동영상 썸네일 등을 무단 게시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시정권고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될 경우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권리자인 민원인의 권리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5900호~45907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권법 제3조에 의하여 외국 저작물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5908호는 ♥♥♥♥ 블로그에 음원 파일을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물 내에 게시자가 직접 작성 및 편집한 내용,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46639호~46642는 밴드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8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9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0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5898호~4589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및 ○○○○○○○○○에서 판매중인 게시물에 동영상 썸네일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민원인은 권리자로 보이는데, 문제의 핵심은 권리자가 직접 법적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부결처리를 하면 안 될 것이며 쇼핑몰 판매자에게 경고의 시정조치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섬네일을 제품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섬네일의 출처라도 표시를 해야 했음.
- C 위원: 최소한 판매자에게 경고 정도는 해야 함.
- A 위원: 권리자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니, '유의해 달라'라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음.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핵심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삭제합시다'라는 건데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리자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무시하면 안될 것 같음.
- C 위원: 만약 부결된다면 침해자 쪽에서 '보호원에서 문제없다고 했다'고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쇼핑몰 게시물, 특히 권리자 민원의 경우에는 주요 심의 기준 중 하나인 대규모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최근 상담민원 사항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권리자가 ◆◆◆에 삭제를 신청했더니 ◇◇◇에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 보호원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오히려 제103조의 복제·전송 중단 기준보다 우리가 시정권고하는 기준과 더욱 먼 경우가 있음. 불법복제물의 성질에 따라 제3자가 신고하는 것보다 권리자가 신고하는 안전을 오히려 보호를 더 못 해주고 있는 경

우도 발생하므로, 관리자가 이러한 신고를 했을 때 제3자가 신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A 위원: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면 우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도 아님. '보호원은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는 게 바르다고 보며 그 다음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관리자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우리 제도와는 안 맞으니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
- D 위원: 예를 들어 영화의 섬네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인지?
- A 위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으며 권리 보호 조치를 어느정도 까지 할 것인지가 문제임. 다만 그 정도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C 위원: 영화 섬네일을 올린 건 일단 저작권 침해이지만 저작권 제한 조항을 거쳐서 침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음. 안전번호 제 2021-45898호~45899호는 상업적인 이용이어서 혹시 관리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나, 관리자가 영상에 상품 구매 광고를 달아놓고 판매를 하는 상업적인 채널로 보임.
- A 위원: B 위원님 말씀은 쇼핑몰 판매자가 출처 표시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클릭해서 동영상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보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45898호~45899호에 대해 기존처럼 부결의견이신지, 아니면 경고의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경고의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C, D 위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5898호~45899호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시정권고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될 경우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권리자인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1-45900호~4590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5900호~459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1-45908호는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사안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음원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C, D 위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5908호는 원안대로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5909호~4663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Assassin’s Creed Valhalla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6047호 (게임)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Assassin’s Creed Valhalla (2020)’는 2020. 11. 10. 발매한 PC 게임으로 웹하드에서 6,100포인트에 판매 중임.
(출판 ‘금발의 정령사 (출판:키다리스튜디오,카카오페이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6236호 출판 ‘금발의 정령사 (출판:키다리스튜디오,카카오페이지)’은 2020. 8. 12부터 연재중인 한국 만화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더 디그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6435호 영화 ‘더 디그 (2021)’는 2021. 1. 29.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9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381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45909호~4663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5909호~4663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46639호~4664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는 영화 '□□', 영화 '■■■■', 임.(보호원이 제출한 채증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모바일 웹하드 및 밴드에 해당 영화가 게시되어 있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6639호~466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45898호~45899호, 안전번호 제2021-45908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45900호~45907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45909호~4664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5. 1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